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창의적 방식의 국가 연구개발추진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하는 방식, 후불형 연구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영 제24조의7 신설)

- 과기정통부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 및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특징) ①초고난도 연구목표, ②임무지향적 기획, ③전담PM 제도를 충족하는 사업들로서, 각 사업들을 ④하나의 추진체계로 운영

나. 경쟁형 R&D 추진방식 (영 제24조의8 신설)

-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단계별 경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원 허용, 경쟁형 R&D 추진방식*,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사전공고 의무

* 기획단계의 경쟁방식 / 연구단계의 경쟁방식 / 경진대회 방식 등

다. 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영 제24조의9 신설)

- 후불형·포상금형 R&D 추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협의체운영, 정산 간소화 등

* R&D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예상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참여조건 및 포상금 지급범위, 포상금 지급 심사 및 절차 등

라. 대규모 혁신도전형 R&D 예산 편성 (영 제24조의10 신설)

- 예타를 통과한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상 계속비 편성요구 가능, 기재부는 필요시 과기 정통부에 적합성 검토 요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7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선정·지원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재원 규모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및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학식 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8(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형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이하“경쟁형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 일부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 수행 과정의 지속·탈락 또는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경쟁형방식은 기획단계의 경쟁방식, 연구개발단계의 경쟁방식 또는 각종 대회(경진대회, 발표회 등)를 통한 경쟁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경쟁형방식을 추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1.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 방식 추진의 세부 진행 절차
3. 연구지속 또는 탈락대상 기관 판단방법 및 기준
4.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여부 및 방법
5. 기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형 방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경쟁형 방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9(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이하 “포상금등 지급”이라 한다) 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예상되는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3. 참여조건 및 포상금 등 지급 범위
4. 포상금 등 지급 대상 심사방법
5.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금 등 지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등 지급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등 지급 사업의 추진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지급된 포상금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등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10(대규모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7(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선정·지원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혁신도전형</u>		

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재원 규모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및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학식 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

<신 설>

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8(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형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이하“경쟁형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 일부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 수행 과정의 지속·탈락 또는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경쟁형방식은 기획단계의 경쟁방식, 연구개발단계의 경쟁방식 또는 각종 대회(경진대회, 발표회 등)를 통한 경쟁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경쟁형방식을 추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1.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 방식 추진의 세부 진행 절차

3. 연구지속 또는 탈락대상 기관 판단방법 및 기준

4.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여부 및 방법

5. 기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형 방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경쟁형 방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9(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이하 “포상금등 지급”이라 한다) 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예상되는 연구개발 기간 및

<신 설>

비용

3. 참여조건 및 포상금 등 지급
범위

4. 포상금 등 지급 대상 심사방
법

5.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금 등 지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등 지급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등 지급 사업의 추진
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에 지급된 포상금은 정산을 하
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등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10(대규모 혁신도전형 연
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①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725